



## 원산지표시 및 상표법 위반행위

### 원산지표시 위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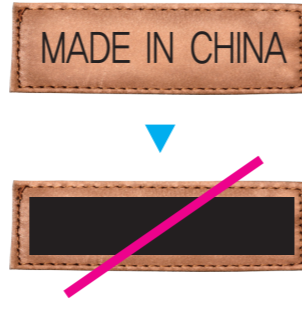
#### 1 오인표시

원산지의 표시를 오인(誤認)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



#### 2 손상변경표시

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


#### 3 허위표시

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



#### 4 미표시

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



#### 5 위반되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

- ※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대외무역법 제59조의2)
- ※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3억 이하의 과징금(대외무역법 제33조의2)
- ※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대외무역법 제59조)

### 상표법 위반



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- ※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(상표법 제230조)
- ※ 관계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)

#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



공산품 안전관리제도 문의/불법 공산품 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02-2133-5375

안전검사 문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-2102-2677

※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및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의 처분





# 소상공인/어린이 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지원



구분	세부품목	주제별 부담률	비고
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(100%지원)	1 가정용 섬유제품 2 가족제품 3 접촉성 금속 장신구	市 60% 시험기관 40% 소상공인 자부담 0%	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
공급자 적합성 확인 어린이제품 (80%지원)	4 아동용 섬유제품 5 아동용 가족제품 6 어린이용 장신구	市 40% 시험기관 40% 자부담 20%	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
안전확인 어린이제품 (80%지원)	7 유아용 섬유제품 8 봉제인형	市 80% 자부담 20%	안전확인 품목

※ 지원대상 : 서울소재 소상공인 및 핸드메이드 작가

※ 구비서류 :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), 국세(국세청), 지방세(민원24시) 완납증명서

낮음  
↑  
위해도  
↓  
높음



## 생활용품 표시사항

### 1 가정용 섬유제품의 경우



- 섬유 혼용률
  - 겉감 ( )% / 안감 ( )%
  - 충전재(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)  
다만, 다운제품은 솜털(다운), 깃털(페더), 기타로 구분하여 %로 표시
- 제조자명(또는 수입자명)
- 제조국명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치수(cm) : 가슴둘레 ( ) / 허리둘레 ( ) / 키 ( )
- 취급상 주의사항 :
-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2 가족제품의 경우



- 품명
- 재료의 종류
- 치수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제조자명
-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- 주소 및 전화번호(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,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)
- 제조국명
- 취급상 주의사항

### 3 접촉성 금속 장신구의 경우



- 사용연령 : 14세 이상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제조자명
-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- 주소 및 전화번호(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,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)
- 제조국명
- 사용상 주의사항(필요시)



## 어린이 제품 표시사항



### 4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



-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
  - 겉감 ( )% / 안감 ( )%
  - 충전재(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)  
다만, 다운제품은 솜털(다운), 깃털(페더), 기타로 구분하여 %로 표시
-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
- 제조국명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치수
- 취급상 주의사항
-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- 사용상 주의사항 :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 (적색 글씨, 음양각 표시,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)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
- 제품 사용연령



### 5 아동용 가족제품의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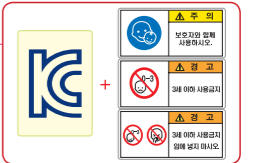
- 품명
- 재료의 종류
- 제조자명
-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- 제조국명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주소 및 전화번호
- 치수
- 취급상 주의사항
- 제품 사용연령



### 6 어린이용 장신구의 경우



- 품명
- 모델명
- 재질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제조자명
-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- 주소 및 전화번호(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,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)
- 제조국명
- 사용상 주의사항
-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NOP,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어린이용 장신구는 제품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품 사용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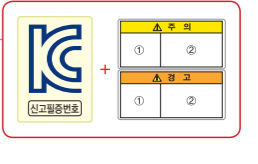


**예 경고!**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

### 7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



-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
  - 겉감 ( )% / 안감 ( )%
  - 충전재(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 한다)  
다만, 다운제품은 솜털(다운), 깃털(페더), 기타로 구분하여 %로 표시
-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
- 제조국명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치수
- 취급상 주의사항
-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
- 사용상 주의사항 :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 (적색 글씨, 음양각 표시,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)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
- 제품 사용연령



### 8 봉제인형의 경우



- 모델명
- 제조연월, 최초판매시즌,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
- 제조자명
- 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
- 주소 및 전화번호
- 안전표시(주의 경고 등)
- 1 사용연령
- 2 크기 및 한계 체중(승용완구, 코스튬 등)
- 제조국명
- 사용설명서 :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는 방법 (적색 글씨, 음양각 표시, 주위 글씨보다 훨씬 큰 글씨)으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
-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NOP, DINP 또는 DIDP가 포함된 어린이용 제품 포장에 다음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

**예 경고!**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